

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(변경등록)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1일
신청인	업체(기관) 명칭		
	대표자 성명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		
(전화:)			
주사무소 소재지		(전화 :)	
분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 (분사무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	(전화 :)	
변경 내용 및 사유 (변경등록 신청만 기재합니다.)			

「해사안전법」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대행업자()의 등록(변경등록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등록 가. 장비사양서(장비의 명세, 성능 등) 및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. 기술인력 채용현황 및 그 자격·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. 변경등록 가.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